

이다.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구라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부서는 사전, 사후에 인권침해의 소지를 적발하고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심의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심의인력의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에 언론사들이 직접 언론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MBC가 자사 보도 또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나서서 구제 또는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언론피해구제센터(가칭)’를 만든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다. MBC는 피해구제 대상과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법, 심의기구 구성방안 등을 마련 중인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sup>5)</sup>

이에 앞서 동아일보가 ‘독자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4월 사고를 통해 “동아일보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독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며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피해구제의 절차는 자사의 독자서비스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일단 관련 취재부서와의 접촉을 주선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자서비스센터가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는 보도에 따른 피해를 기사를 통해 구제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물질적 보상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인색했던 언론사들이 자사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다.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언론사 소송을 미리 예방하는 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자칫 자사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도 및 제작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피해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은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자기와는 서로 다른 태도와 주장도 같이 알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반론요구를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기자의 식견과 객관성 부족, 부주의한 감정개입 등으로 보도피해를 일으키는 현실을 언론은 인정해야 한다. 보도기사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사가 거기에 비판이나 논평을 가하는 식으로 ‘의견 개입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자존심 때문에 정정 내지 반론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는 사후 구제로는 완전히 회복하기가 힘든 만큼 해당 언론들은 반론 요구에 대하여 야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고, 또 반론보도가 언론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다. 언론사는 소송과 반론청구 등의 증가를 불필요한 부작용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설 경우 언론이 인권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피해자에게 주게 되고 자칫 감정에 휘말린 소모적인 소송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 6. 맺는말

현대 언론이 거대화, 독점화 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개인의 표현자유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격권은 항상 거대 언론으로부터의 침해에 노정되어 있을 수 있다. 독자와 시청자로부터 유

---

5) 기자협회보 2001.11.3

리된 언론의 자유는 마치 언론사의 자유, 나아가 언론을 소유한 자의 자유로 변질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이런 이유로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언론사에 대하여 그 막강한 영향력과 무책임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일종의 공포 내지 경악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감히 언론자유를 내세우면서도 보도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국민 당사자에게는 접근이나 반론을 통한 표현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율배반적 태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반론권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매체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사상이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고 체계화된 인격권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재평가할 만한 가치를 지닌 권리인 것은 틀림없다. 현행의 반론권 제도는 언론 측이 반기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도에 의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론권을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언론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의 선택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선택 이전에 언론이 보도 피해자의 반론 수용을 언론윤리의 당연한 덕목으로 삼고 이를 적극 실천해 가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할수록 언론보도의 수준은 선진적이고 반론권을 둘러싼 시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는 있다. 반론권의 형태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결국 그것은 그 국민과 언론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상대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